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76
----------	------

2024년 2월 2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최윤희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윤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내 공립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학교 상징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학교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삭제를 위한 요건과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또는 삭제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의 요건을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용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최유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76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학교 상징물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 구성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¹⁾
 -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과는 달리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내 교훈, 교표, 교가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 각 학교의 교훈, 교표, 교가 등은 해당 학교의 정체성과 학교 구성원의 일체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학교의 교훈, 교표, 교가 등의 관리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2015년에는 한 음반제작업체가 전국 초·중·고교의 교가를 무단으로 음원사이트에 등록하여 음원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²⁾.
- 또한 2017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2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교표 상표권을 출원·등록해 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³⁾, 이후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를 고려할 때 학교를 상징하는 교훈, 교표, 교가 등에 대해서는 저

1) 보도자료: 음악방송에 안무가 명시... 문체부, 저작권 강화 전략 발표(조선비즈, 2023.12.27.)

2) 보도자료: 교가 음원 무단으로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중부일보, 2015.2.9.)

3) 보도자료: 서울 중·고교 '교복가격 안정화' 위해 교표 상표등록(아시아경제, 2017.1.9.)

작권 보호는 물론 학교 재산권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까지 교육청 차원의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동 조례안이 학교 상징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학교 상징물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생교육 측면에서도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교육감 등의 책무 (안 제1조~제4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안 제5조), 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안 제6조),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안 제7조),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안 제8조)이 순차적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상징물”을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로 정의하고 있

습니다.

- “상징물”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로⁴⁾ 현행 법령상 “상징물” 자체를 정의한 규정은 없고 예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바⁵⁾,

안 제2조에서 “학교 상징물”을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이 학교의 특성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일체의 상징·표현물로 예시적으로 정의한 것은 사전적 의미 및 사회통념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에게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관련 지침조차 없어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인 바, 안 제4조에서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실효성 있는 학교 상징물 관리·유지를 위한 책무를 부여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4)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에 대한 검토(안 제5조)

4) 네이버 국어사전

5)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3호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제2항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 등

-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⁶⁾,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법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 상징물 제·개정 시 학교장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 상징물 관리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그리고 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구체적인 활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학교 상징물 관리의 기준 마련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안 제6조제4항에서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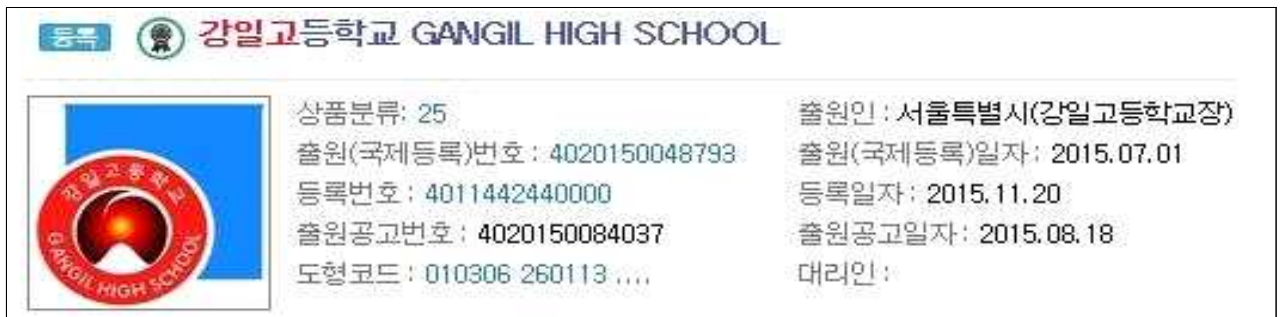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식재산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지식재산을 「상표법」 등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등이나 「저작권법」에 따른 각종 권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⁷⁾.
- 참고로 지난 2015년 서울시 관내 강일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표를 상표 등록하고 교복 공급 낙찰업체에게만 교표 사용 권리를 부여하였는 바, 이로 학교주관 교복구매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림] 상표 등록된 강일고등학교 교표⁸⁾



- 따라서 안 제6조제4항은 이와 같은 학교의 학교 상징물에 대해 지식재산화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학교의 학교 상징물에 대한 지식재산화를 독려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상징물을 지식재산화 하는 것에서 나아가 효율적인 관련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상징물의 지식재산화를 종합적으로 주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8)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한국특허정보원)

6)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안 제7조)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 상징물 사용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사용 승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이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해당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되지만 지식재산화가 되지 않은 학교 상징물 사용의 경우 현재까지 이에 관한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 학교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은 내실 있는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⁹⁾, 안 제7조제3항에서 학교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에 대한 검토(안 제8조)

9)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1항은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 사용자가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 안 제8조제3항에서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에 관해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8조제4항에서는 학교장은 지식재산화된 학교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107조 등은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¹⁰⁾ 안 제8조제4항에 이를 반영한 것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 2. 1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10)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개인 홍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해당 학교 규칙을 따른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

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